

재해사례

(굴삭기)

통신관로 매설작업 중 굴삭기에 부딪힘



광 관로공사 현장에서 미니굴삭기가 기존 투스콘 포장면을 따라가며 투스콘을 걷어내면 도로변에 있는 굴삭기가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, 굴삭기(타이어식)가 Microduct관을 이동시키기 위해 도로 상을 이동 중 도로경계석 옆에 있던 작업자를 부딪침



! 재해발생 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
 - 굴삭기와의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흡,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이동 중 전진하는 굴삭기와 부딪힘

+ 안전작업 방법

TIP

1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실시

-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
-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, 위험장소 통제 등을 통한 안전작업 실시





통신관로 매설작업 중 굴삭기에 부딪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세요!

이번 사고는 굴삭기가
덕트 관을 운반하기 위해
이동 중 도로변에서 작업
중이던 작업자가 굴삭기에
부딪혀 1명이 사망한
재해입니다.



오늘은 투스콘 포장면 제거와 어제
설치한 맨홀덮개를 설치해 주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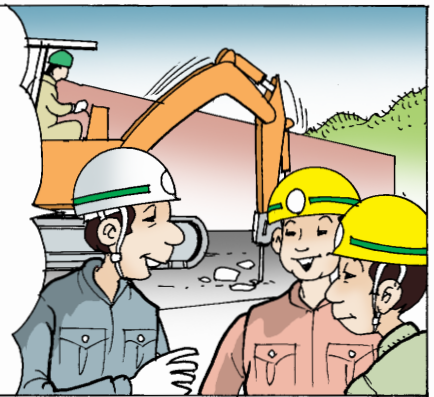
예! 알겠습니다.



자~ 다 모였으니 오전 내 50m
이상 포장면을 제거해야 합니다.



변씨는 어제 설치한
덮개 하부 고정용
미장 작업을 하고,
김씨, 강씨는 덕트
관을 도로상으로
이동시켜야 하니
굴삭기에 매다는
작업 좀 도와줘요!



여보게! 맨홀 덮개가
어디 있는지 알아?

몰라 어디서
본 것 같은데...
반장님한테
물어봐!



이쯤일 텐데...
어디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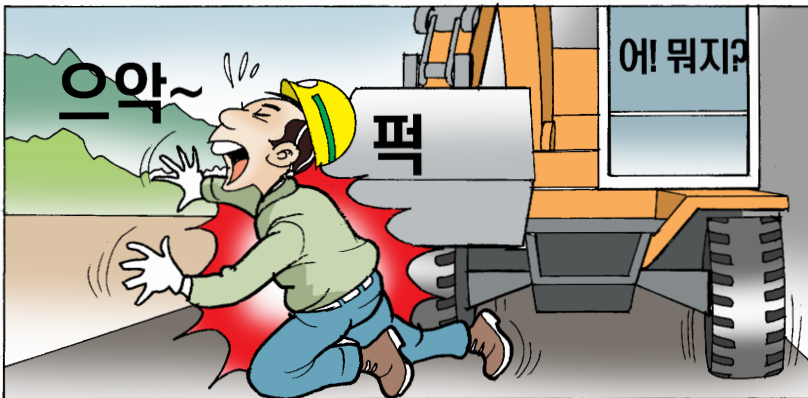
버킷 때문에 운전석에서
보이지 않는 부분이
있네요!



으악~

퍽

에! 뭐지?



차량계 건설기계
작업 장소에는
유도자를 배치하여
근로자 출입을
통제하고,
해당 건설기계를
안전하게 신호하는
등 재해예방 조치를
철저히 합니다.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제200조(접촉의 방지)

